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6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최형두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광규택 · 구자근
권영세 · 권영진 · 김 건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김정재 · 김종양 · 김태규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유의동 · 윤상현 · 윤영석
윤용근 · 윤재옥 · 윤한홍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진숙 · 이철규 · 이현승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운
최수진 · 최은석 · 한기호
한지아 의원(10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투표함 보관·이송, 관외 사전투표우편함 관리, 통합명부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우려, 투표용지 관리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절차와 선거관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해서 한치의 의구심도 없는 투·개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사전교육 등이 미흡함.

또한, 현행 공직선거제도는 투표·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와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두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이나 개표 과정의 오류 등에 대한 사전적·제도적 검증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분류·심사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고 있으나, 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집계자료와 실제 투표지에 대한 상호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투표율이 사전·사후에 조작되는 사례가 빈발함.

최근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6조의2제1항 등).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모니터링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선거일을 1일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투표용지의 수량은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 수 이상이 되도록 작성 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마.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 대하여 각각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개표참관 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함(안 제161조 의2 및 제181조의3 신설).

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및 개표장소에서의 투표함 봉 쇄·봉인 및 투표함의 이송과정과 개표의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그 영상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 간 보

관하여야 하며, 선거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171조의2 및 제182조의2 신설).

사.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함(안 제178조제1항).

아.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자. 개표결과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함(안 제178조제5항 신설).

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지의 실제 수량 및 후보자별 분류·집계 결과와 개표상황표 등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검증하여야 하고, 그 검증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78조의2 신설).

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선거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이하 “선거관리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 과정의 모니터링
2. 선거관리 과정에 관한 개선의견 제출
3. 선거교육 및 참관 관련 프로그램 참여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모니터링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모니터링의 대상·방법·절차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요일”을 각각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단서·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을 각각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를 “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를 각각 “투표소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을 “투표소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 중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를 “투표참관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の 手當”을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을 “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를 “투표참관인의”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표에”를 “투표 및 개표에”로,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을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투표사무를”을 각각 “투표 및 개표사무를”로 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을 “우편”으로,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투표함의 수는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항”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수량은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 수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選舉日”을 “선거일 둘째 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투표소를 오후”를 “투표소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닫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선거일 오후”를 각각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158조를 삭제한다.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투표참관인 교육)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투표참관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투표절차 및 투표관리 기준
2. 투표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3.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확인 방법
4.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방법
5. 그 밖에 투표참관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교육의 실시시기, 교육시간, 이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0조 및 제1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투표함 봉쇄 및 이송 등의 기록 및 공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의 투표함 봉쇄·봉인 및 투표함의 이송과정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選舉日전”을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른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4조를 삭제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각각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選舉日”을 “선거일 둘째 날”로 한다.

제1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

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을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④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개표결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수의 차이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하인 경우에는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개표결과의 검증)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지의 실제 수량 및 후보자별 분류·집계결과와 개표상황표 등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투표지 및 집계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따른 검증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1조의 제목 “(개표참관)”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을 각각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開票參觀人は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로,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을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개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 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의2부터 제18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명을,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3(개표참관인 교육)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개표참관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개표절차 및 개표관리 기준
2. 투표지의 분류·심사 및 집계 절차
3. 개표상황표 등 개표 관련 집계자료의 확인 방법
4.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확인 방법
5.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방법
6. 그 밖에 개표참관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교육의 실시시기, 교육시간, 이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4(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투표소 또는 개표소 등 개표장소(이하 “개표장소”라 한다)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2조의2(개표과정의 기록 및 공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에서의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의 분류·심사 및 집계 과정 등 개표의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관 및 공개에 있어서는 제17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의 제목 “(開票所の 出入制限과 秩序維持)”를 “(개표장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開票所”를 각각 “개표장소”로 한다.

제184조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

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를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거소투표·사전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2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를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을 “재외투표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을 “개표장소에서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제16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第183條(開票所の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를 “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을”로, “開票所에”를 “개표장소에”로 한다.

제261조제4항 중 “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을 “제17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사목 중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47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을 “단서”로, “참관을”을 “투표 또는 개표의 참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을 “제147조제9항”으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을 “제218조의19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投票 및 開票事務員”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u>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u> ② · ③ (생략) <u><신설></u>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 ----- <u>선거일</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4(국민참여형 선거관리모니터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이하 “선거관리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u> <u>② 선거관리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u> <u>1. 선거관리 과정의 모니터링</u> <u>2. 선거관리 과정에 관한 개선</u>

	<u>의견 제출</u> <u>3. 선거교육 및 참관 관련 프로그램 참여</u> <u>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 <u>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모니터링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선거관리모니터링의 대상·방법·절차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③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事務를 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第34條(選舉日) ①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그 任期滿了日 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제12조(선거관리) ① -----

-----투표관리관을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 -----

-----.

1. -----
-----화요일
과 그 다음 날

2. 國會議員選舉는 그 任期滿了 日 전 50日 이후 첫번째 <u>수요 일</u>	2. ----- ----- <u>화요</u> <u>일과 그 다음 날</u>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 體의 長의 選舉는 그 任期滿 了日 전 30日 이후 첫번째 <u>수 요일</u>	3. ----- ----- ----- <u>화요</u> <u>일과 그 다음 날</u>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 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舉日前日이나 그 다음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u>수요일</u> 로 한다.	② ----- ----- ----- ----- ----- --- <u>화요일과 그 다음 날</u>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생 략)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 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 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 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 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	1. ----- ----- ----- ----- -----

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
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
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
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3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

-----.

가. -----

-----화요일과
그 다음 날-----.

-----화요
일과 그 다음 날-----
-.

나. -----

-----화요일과 그
다음 날-----.

다. -----

-----화요일과 그 다음
날-----.

2.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생략)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선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표소에서---

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3. (생략)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투표소에-----

2. 3. (현행과 같음)

4. 투표소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
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
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 6. (생 략)
⑤ ~ ⑧ (생 략)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
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
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
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
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
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

5. 투표소를-----

5의2.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합·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

-----.

1. (생략)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4.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투표소-----

3. · 4.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투표참관인-----

_____.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생략)

②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事務員(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選舉事務所に 市・道數의 6 倍數 이내와 市・道選舉連絡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 및 區・市・郡選舉連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 읍・면・동(제148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폐지・분할・합병 직전의 읍・면・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u>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합정에 장기 기거하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 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 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 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 · 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 일까지 소속 군인 · 경찰공무원 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u>	<삭 제>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5. (생략)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手當과 식비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투표참관인의-----

7.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規定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④ -----
----수당은-----

-----투표참관인의-----

--.

⑤ (생 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
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
-----투표 및
개표에-----

-----1명
을---.

② 투표관리관-----

-----위
촉한다.

③ -----

-----투표관리관-----

-----.

④ 투표관리관-----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選舉日 전 3일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⑪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

⑨-----

투표 및 개표사무를-----

-----.

1. ~ 4. (현행과 같음)

5. 투표 및 개표사무를-----

⑩·⑪ (현행과 같음)

<삭 제>

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
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
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
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
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
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
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⑥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 <u>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u> <u>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u> <u>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u> <u>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u> <u>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u> <u>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u> <u>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u> <u>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u> <u>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u> <u>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u> <u>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u> <u>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u> <u>아서는 아니 된다.</u> ⑦ <u>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u> <u>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u> <u>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u> <u>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u> <u>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u> <u>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⑧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생략) ② <u>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u> <u>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u>	<u><삭 제></u> ⑦ <u>제1항</u>----- ----- ----- ----- -----. ⑧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 음) <u><삭 제></u>
---	--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内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거소투표-----

선거일 둘째 날-----

-----.

⑥ -----

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

-----투표소
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

-----닫는다.

-----.

⑦ (현행과 같음)

⑧ -----

-----선거일 둘째 날 오후--

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삭 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1조의2(투표참관인 교육)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투표참관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투표절차 및 투표관리 기준
2. 투표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3.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확인 방법
4.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방법
5. 그 밖에 투표참관에 필요한 사항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교육의 실시시기, 교육시간, 이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
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
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
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
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
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
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
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
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가 選舉權者중
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
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不

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舉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투표사무원”으로 본다.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생 략)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생 략)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

-----.

를 기록한다.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 투

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
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
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
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
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
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
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

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
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한 모
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
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71조의2(투표함 봉쇄 및 이송

등의 기록 및 공개) 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에서의 투표함 봉쇄・봉인 및
투표함의 이송과정 등을 영상
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第172條(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하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 또는 委員

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

③開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開票所에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在籍委員(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 第13項 및 同法 第5條(委員長) 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選舉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73條(開票所)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日전 5日 까지 그 區・市・郡의 事務所所在地 또는 당해 管轄區域(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設置할 開票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야 한다.

第173條(開票所) ①-----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른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

②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③ (생략) ④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의 開票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74條(開票事務員)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 選舉日 전 3일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	---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郵
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
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

접수·개표) ① -----

거소투표-----

<삭 제>

③ -----

-----우편투표함-----

④ -----우편투표함-----

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
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
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
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
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

선거일 둘째 날-----

-----.

⑤ (현행과 같음)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
로 계산한다.

<삭제>

③ -----

-----투표관
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
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신 설>

<신 설>

전에 득표수를-----

-----, <단서 삭제>

④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개표결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수의 차이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하인 경우에는 개표결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舉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 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신설>

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

-----.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8조의2(개표결과의 검증)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지의 실제 수량 및 후보자별 분류·집계 결과와 개표상황표 등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투표지 및 집계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181조(개표참관) ①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다른 검증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소투표-----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 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 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舉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舉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삭 제>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사유

<삭 제>

없이 參觀를 거부하거나 그 職
을 辭任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
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
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
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
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
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⑥ 開票參觀人은 投票區에서 송
부된 投票函의 引繼·引受節次
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
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
을 參觀할 수 있다.

⑦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識別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席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에 관한 違
法事項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

<삭 제>

<삭 제>

⑦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

⑧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⑨開票參觀人は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
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
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
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
話・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
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
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⑩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
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⑨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
서-----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안---

⑩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

<삭 제>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⑫ (생략)

<신설>

⑫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

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명을,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신 설>

<신 설>

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3(개표참관인 교육)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개표참관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개표절차 및 개표관리 기준
2. 투표지의 분류·심사 및 집계 절차
3. 개표상황표 등 개표 관련 집계자료의 확인 방법
4.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확인 방법
5.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방법
6. 그 밖에 개표참관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교육의 실시시기, 교육시간, 이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4(투표관계서류의 인계)

第182條(開票觀覽)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區・市・郡選舉管理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第182條(開票觀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투표소 또는 개표소 등 개표장소(이하 “개표장소”라 한다)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2조의2(개표과정의 기록 및 공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에서의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의 분류・심사 및 집계 과정 등 개표의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관 및 공개에 있어서는 제171조의 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委員會와 그 上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 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③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開票가 進行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장소-----

②-----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

③-----개표장소-----

-----개표장소-----

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⑥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

-----.

④ (현행과 같음)

⑤-----개표장소-----

-----개표장소-----

-----.

⑥-----

-----개표장소-----

-----.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

록의 작성 등)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략)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록의 작성 등) ①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

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2조(거소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 ② (생략)

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④ 同時選舉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

1. (현행과 같음)

<삭제>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政黨順位の 앞順位の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 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同時選舉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 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생략)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

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략)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

-----.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③ -----

-----둘째 날 오후-----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
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
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
게 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
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
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
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
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
한다.

⑤ · ⑥ (생략)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
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
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
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
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

-----.

④ -----

-----둘째 날 오후-----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거소투
표”-----

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
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
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
에게 金錢·物品·車馬·響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 7. (생략)

② ~ ④ (생략)

⑤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직
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
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
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
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
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
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
役に 處한다.

⑥ ~ ⑧ (생략)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투표
참관인과-----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투표관리관을-----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
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
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
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
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
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생략)

② 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
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
人이 設置한 通信設備를 破壞
또는 훼손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 (생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

1. -----

-----재외투표소 및-----

2. (현행과 같음)

② 개표장소에서 제181조(투표
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
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의 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
는 개표참관인-----

-----.

③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같음) ② ----- ----- -----투표사무원----- ----- ----- ----- -----.
第249條(投票偽造 또는 增減罪) ① (생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第249條(投票偽造 또는 增減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투표사무원----- ----- ----- ----- -----.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생 략) 나. <u>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u> 다. (생 략) 라. <u>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u> 마. ~ 사. (생 략) 아. <u>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識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u> 3.·4.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생 략) ④ <u>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u>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u>제161조제7항</u>----- -----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u>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을-</u> -----<u>개표장소에</u>----- ----- ----- ----- ----- ----- 3.·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73조제3항</u>
--	--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者

가. ~ 바. (생략)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
47조제10항(제148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
지 아니한 자

아. (생략)

3. ~ 6.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
47조제10항-----

아.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⑧ -----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 제4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의2.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마. (생략)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 6. (생략)

⑨ ~ ⑫ (생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

-----.

1. -----단서-----

-----투표 또는 개표의 참관을-----

1의2.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7조제9항-----

-----투표사무원-----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

② ~ ⑥ (생략)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 · 開票) ① ~ ③ (생략)

④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舉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 · 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 · 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 · 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

[illegible]

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投票 및 開票 기타 選舉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の <u>投票 및 開票事務員</u>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로 정한다.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투표사무원</u>----- ----- ----- ----- ----- -----.
--	---